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5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

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위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26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7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치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

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가. 룰 분법·이관 필요성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율하는 다수의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두 개의 법률에서 나뉘어 규율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현행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도농교류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공간의 개발·정비를 위한 절차법적 기능을 가진 법률로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농어촌정비법」은 1995년 시행(법률 제4823호)된 이래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9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장·제목 변경, 조문 삭제, 가지조문 추가, 조문 이관·신설 등으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고 법률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음(제정 당시 107개 조문에서 현행 155개 조문으로 증가).

그런데 하나의 법령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다수의 내용을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하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법령을 분법하여 새로운 다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¹⁾.

분법의 세부기준²⁾으로는 ‘법령 내용의 복잡성 및 이해 곤란성’, ‘법령 체계의 일관성 유지 곤란’, ‘단일법 내용의 세분화 필요성’, ‘유사 법령과의 통합 필요성’,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특정 분야 중요성(시급성)의 효율적 해결’ 등을 들 수 있음.

【분법의 세부기준】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 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정비법」의 주요규정인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 농어촌지역 정비와 개발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유지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155개 중 12개 조문(보칙과 벌칙을 제외하면 9개 조문)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낮으나, 최근 농어촌 생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 최윤철 외(2011),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활인구 유입, 농어촌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여 정비하면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분법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제정법으로 만드는 방안과 기존 유사취지의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도농교류법」의 목적³⁾이 농어촌민박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현행 「도농교류법」에 이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 「도농교류법」에 이관하여 분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분법 방안 비교】

구분	「도농교류법」과 통합	별도 법률 제정
장점	▶ 입법 경제성	▶ 입법 효율성 ▶ 규율(목적)의 명료성
쟁점	▶ 양립의 모호성 ▶ 조문 정비 난해	▶ 과잉 입법 우려

2.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의 소득보전 및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확대하기 위하여 '95년 「농어촌정비법」에 도입된 제도로써, 그간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4도(都)3촌(村)⁴⁾'의 확산, 힐링·위케이션⁵⁾ 등에 따른

3) 「도농교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농어촌 생활인구의 증가와 귀촌·농어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농어촌민박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 제도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불법·편법 영업이 증가하는 등 관리·감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한편,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로 인한 빈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농촌빈집을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면서,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4)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

5) Work(일) +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나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근무 방식

6) 농어촌 민박때 신고제서 허가제로... 실거주지는 해당민박서 도내로 완화를(서울신문,'24.12.10)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없애자”...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톡톡(한국농어민신문,'24.7.30.)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